

의안번호	제 3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03. . .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 연월일	2003. 8. 19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일자	2003. 8. 19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제6119호, 2002. 1. 19)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2003. 4. 1)됨에 따라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제9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함.(안 별표1 제1호)

나.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함.(안 별표1 제2호)

다.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별표1 제3호)

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상함.(중전 별표1 제3호)

3.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03. 5. 21 ~ 6. 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신문게시공고 및 인터넷 게시공고

(다) 의견제출내용 및 반영 :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이견없음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근거법령란의 “제34조제1항”을 “제34조”로 하고,
제1호 부과금액란 1차위반의 “20”을 “50”으로 2차위반의 “60”을 “100”으로 3차위반의 “100”을 “300”으로 하며,
제2호중 “시설에”를 “시설의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으로 부과금액란 1차위반의 “40”을 “50”으로 2차위반의 “60”을 “100”으로 3차위반의 “100”을 “300”으로 하고,
제3호 부과금액란 1차위반의 “20”을 “30”으로 2차위반의 “60”을 “70”으로 3차위반의 “100”을 “200”으로 하여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구조문 대비표

과태료부과기준

현행					개정안				
법령근거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근거법령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1.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0	60	100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현행과 같음	50	100	300
	2.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40	60	100		2. 법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50	100	300
	<신설>					3. 법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3.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60	100		4. 현행과 같음	30	70	200

관계법령발취

1. 국민건강증진법

第34條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1.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35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第9條 (禁煙을 위한 措置) ②담배事業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第28條 (보고·檢査)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8조제3항 및 제4항·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第33條 [과태료부과]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을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자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